

2022년 제7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300-63번지 [창고시설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2. 8. 18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인천항만공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
	지 번	300-63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22,620.4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준공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8,815.29㎡	건폐율	38.97%	층수 지하 : 총 / 지상 : 3층
	주 용 도	창고시설	구 조	공업화박판강구조 (PEB)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24.37m	용적률	84.37%	연면적 합계 19,085.40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착공시 건축감리 구조협력 계약서 제출하실 것. ○ 아래의 내용 추가 보완하시기 바람. - 조치계획 11번: 구조계산서 및 구조도서에 내진 철근 적용 명기 (중간모멘트 골조) - 조치계획 12번: CANOPY 접합 추가(PC부와 철골 접합부) - 조치계획 13번: S.O.P THK. 300파일 설치부 보강 여부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2년 제7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중구 윤남동 1710-1번지 [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2. 8. 18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덕평산업개발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동				
	지 번	1710-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34,540.6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 일반주거지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6,585.2509㎡	건폐율	19.0652%	층수 지하 : -2층 / 지상 : 25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8동
	최고높이	76.37m	용적률	189.9124%	연면적 합계 101,191.9967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114A,B,C㎡의 테라스, 침실 2/3 영역에는 중앙부 하부 보강근이 배치되지 않아 최종간격이 @420으로 재검토 필요 ○ 착공시 건축감리 구조협력 계약서 재출하실 것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 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2년 제7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중구 운서동 3094-4번지 [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2. 8. 18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				
	지 번	3094-4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1,774.2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,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062.3399㎡	건폐율	59.88%	층수 지하 : -4층 / 지상 : 10층
	주 용 도	업무시설(오피스텔) 및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40.00m	용적률	565.64%	연면적 합계 15,502.8345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착공시 건축감리 구조협력 계약서 제출하실 것.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 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